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5나1774 판결 [지상물매수청구 등]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5. 8. 20 선고 2015나177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4가합10428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1. B

2. C

변론종결 2015. 6. 25.

판결 선고 2015. 8. 20.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4가합1042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첫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임차인 소유의 지상물을 임대인에게 매도하는 것인바,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증축, 대수선한 것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에 다름없으므로, 그 등기 명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물이 그 신축·증축자인 자신의 소유임을 전제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일부 철거한 후 증축, 대수선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가 당연히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 내지 승계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증축·대수선된 이 사건 건물이 원고 소유임을 전제로 한 위 지상물매수청구권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승영

판사김영식

판사장윤선